# [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 지원 첨부 #1]

장기 근속자에 대한 해외 연수 규정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.

### 1. 장기 근속자 해외 연수 지원 취지

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이에 대한 격려와 포상을 함과 동시에 직원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견문을 넓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, 궁극적으로는 '애사심' 함양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\* 5년 근속 해외 연수 에 대하여는 '동남 아시아'를, 10년 이상 근속 해외 연수 에 대하여는 '미주, 유럽 등'의 실비 상당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.

# 2. 해외 연수 대상자:

입사일 기준 매 5년마다 지원하며, 10년 이후 대상자부터는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.

#### 3. 신청 절차

(1) 대상자 공지: 당해 연도에 근속연수 5년, 10년, 15년, 20년 등의 초과 근속일이 포함되는 자로서, 초과 근속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'대상자'로서 자격이 발생한다.

(매년초, 경영지원실에서 취합하여 당해 대상자 및 이월 대상자 공지)

# (2) 해외 연수지 선정 및 일정 수립

- 1) 대상자는 부서가 다른 4~6명을 1개팀으로 구성하여 해외 연수지 및 일정을 수립하여 '해외 연수 품의 서'를 작성,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2) '해외 연수 품의서'는 연수참가자, 일정, 연수지, 소요예상비용을 기본 내용으로 하며, 별첨 자료로써 '세부 연수 일정', '예상 비용'등을 첨부하여 작성한다.
- 3) 배우자 동반시에도 팀을 구성해야 하며, 개별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임원은 제외한다.
- 4) '해외 연수'의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, 해외 연수 장소와 일정 및 여행사는 '업무 외 시간'을 이용하여 참가자 회의로 결정하며,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'패키지 여행'이나 '휴양지'만을 목적지로 하는 해외 연수 는 불허한다.
- 5)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포함하여 여행 가능하다.

# (3) 해외 연수 결과 보고서

'해외 연수'를 다녀온 후,2주 내에 부서장 결재를 득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사진 파일을 제출한다.

### (4) 기 타

5년 근속자 그룹과 10년 이상 (예: 10년, 15년, 20년, 25년...) 장기 근속자 그룹으로 각각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는 5년 근속자와 함께 팀을 구성하거나, 배우자동반 해외 연수로 진행할 수 있으며, 이 때 지원규정은 아래 '지원규정 2)'를 준용한다.

# (5) 지원규정

- 1) 5년 근속자:
  - a) 지원 금액: **1,000,000원**
  - b) 지원 휴가: 1일 (유급)
- 2) 10년 이상 근속자 (10년, 15년, 20년, 25년, 30년...):
  - a) 지원 금액: 2,000,000원 (배우자 동반시에도 동일)
  - b) 지원 휴가: 1일 (유급)

# (6) 경비증빙 자료

- 1) 해외 연수 복귀 후, 해외 연수에 소요된 항공료, 숙박비, 식비, 교통비, 부대비용 외 경비지출에 대하여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, 영수증에는 정확한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2) 해외 연수와 무관한 선물 구입비 등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.
- 3) 회계 부서로부터 인정 받은 경비증빙 자료 제출 합산액이 해당 지원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, 경비증빙 자료를 제출한 금액에 한해서 지원한다.

# 4. 이월 규정

- (1) 당해 연도에 '대상자'가 되었으나, 업무상 혹은 부득이한 이유로 '장기근속 해외 연수 제도'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적용한다.
- (2) 다음 '장기근속 해외 연수'의 대상 자격이 발생할 때까지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, 두 '장기근속 해외 연수 제도'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휴가를 합산하여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다. 단, 두 개 까지만 합산 사용이가능하다.
- (2) 본 제도는 근속자를 위한 제도이므로, 퇴사한 때에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.